#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22 발의연월일: 2024. 6. 25.

발 의 자:민형배·신영대·서미화

이수진 • 노종면 • 이정문

복기왕 • 어기구 • 김문수

이훈기 · 정성호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보험사가 대남전단살포 등 북한 도발행위에 따른 상해 등 인명 피해도 보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.

최근 북한의 잇따른 오물 풍선 살포로 차량 앞유리 파손 등 시민 피해가 속출합니다.

억울한 손해인데 현행법은 차량 피해보상만 가능합니다. 상해 등 인 명피해는 전쟁 면책 적용으로 보상이 제외되기도 합니다. 피해자가 모 두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.

이에 「통합방위법」상 침투·도발 등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는 전쟁면책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.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재산권을 지키려는 것입니다.(안 제660조)

법률 제 호

###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60조의 제목 "(戰爭危險 等으로 因한 免責)"을 "(전쟁위험등으로 인한 면책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"保險事故가 戰爭 其他의 變 亂으로 因하여"를 "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"로, "當事者間에"를 "당사자간에"로, "約定이"를 "약정이"로, "保險者는 保險金額을 支給할 責任이"를 "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보험사고가 「통합방위법」 제2조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가 원인이 된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66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사고 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第660條(戰爭危險 等으로 因む 제660조(전쟁위험등으로 인한 면 免責) 保險事故가 戰爭 其他의 책) ①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 變亂으로 因하여 생긴 때에는 의 변란으로 인하여--------당사자간에----약정이---當事者間에 다른 約定이 없으 ----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 면 保險者는 保險金額을 支給 할 責任이 없다. 급할 책임이----. <신 설>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보험사 고가 「통합방위법」 제2조제9 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가 원인이 된 상황으 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보 험자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 다.